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557
------------	-----

발의년월일 : 2004년 12월 10일

발 의 자 : 윤문수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김포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 토목, 도시, 건축, 환경, 농업, 회계 등 각 계의 전문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 각계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의회에서 지정하는 특정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 시의회 내에 설치(안 제1조)
- 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 다. 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15인内外로 구성(안 제3조)
- 라.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발췌서 : 없음

5.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6.예산수반사항 :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

7.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8.기타 참고사항 : 북제주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 ②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 ③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 ④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담당이 된다.

제 4 조(위원의 위·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보건·복지·토목·건축·환경·농업·회계 등에 관한 전문인사
2. 신도시 및 택지개발등과 관련한 도시행정 분야의 전문인사
3. 조례안 및 청원등의 의안처리와 관련한 법률적 자문이 가능한 법률 전문인사
4.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자
5.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자문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5 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 6 조(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전문인사인 위원
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받을 수 있다.

제 7 조(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전문인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8 조(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북제주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
(2003. 9. 26. 조례 제176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북제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북제주군의회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
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제4조 (위원장의 위·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행정·토목·건축·환경·농업·해양수산·관광·회계 등에 관한 전문가
 2.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
 3. 기타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등
-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기밀 등을 누설할 때
 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분야 전문가인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지원 받을 수 있다.

제7조 (의견청취) 의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①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북제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